

2019년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15.(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0건(안전번호 제 2019-147138호~14719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상기 게시물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공중의 이용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133조의 3항 요건을 만족하기에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되었을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7138호~147197호 {‘ㄹㄹㄹㄹㄹㄹ’ 사이트의 ‘(방송)한때는 신이었던 짐승들에게(2019)’ 등 26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7138호 ~ 147195호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7138호~147197호 ‘신이었던 짐승들에게’ 등 260건의 게시물은 온라인상으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에 복제 전송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 이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

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